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0.14(화) 10:00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학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0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조례의 내용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(제7조 제3호와 제4호)
- 나. 규제개혁 대상 내용 삭제(제7조 제2호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은 타당함